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2
------	------

2021.4.22  
기획경제위원회

##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1.4.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조인동)

### 1. 제안이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별표 1).
- 나. 서울특별시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 추천·임명방법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10조).
- 다. 국가경찰과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서울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4조).
-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마.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 그 밖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안 제19조).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나. 자치경찰제 도입 경위

-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이념에 따라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치안과 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sup>1)</sup>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치안 서비스의 시민대응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시민 치안 만족도를 제고하는 장점이 있음.

---

1) 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③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④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제는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기로 계획을 제시하였고<sup>2)</sup>, 이후 자치분권위원회의 의결(2018.11.30.), 당·정 협의회(2019.2.14)를 통해 광역단위로 자치경찰 조직을 도입하여 2019년 시범실시 후 2021년 전면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음.
- 하지만,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혼선 등의 우려와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예산 편성에 대한 부담으로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이 구별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기존의 경찰 조직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도입 방향이 선화되었음.
- 이에 따라 국회에서 경찰조직 중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인력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는 「경찰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고(2020.12.9.)<sup>3)</sup>,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

2)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2018.6.21.), 수사권 조정은 자치 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음.

3) 경찰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법률명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 다.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위임사항

- “경찰법” 제4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무를 열거하고 있음(제2항제2호 가목~다목).
- 이 중 ▶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 ▶ 지역 내 교통활동,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sup>4)</sup>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제4조제2항).
- 수사사무는 경찰법에서 열거된 ▶ 소년범죄,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경범죄 및 기초 질서 관련 범죄, ▶ 가출인 및 실종아동 수색 및 범죄 등에 한정해 허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제4조제3항).

4)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사항(제18조~제27조)을 제4장에 두면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의 임명과 결격사유,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심의·의결,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과 사무기구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제20조제8항), 위원회 운영(제26조제4항)은 법률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의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제27조제4항).

## 라. 주요사항 검토

### (1) 입법구성 및 표준 조례안과의 비교

- 제정안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안 제2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3조~안 제10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11조~안 제14조), 사무기구(안 제15조), 예산(안 제16조), 자치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안 제17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과 비교하면 입법체계와 구성에서 유사하나, 일부 규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sup>5)</sup>.

< 표준 조례안과 서울시 제정안 조문 구성 >

표준조례안		서울시 제정안	
조 항	조 제 목	조 항	조 제 목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2조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3조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제5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제5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임명방법	제6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제6조	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7조	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8조	관계자의 위원회 참석·답변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	위원의 수당		
제8조	위원의 여비(미반영)	제10조	위원의 수당
제9조	지급 절차 등(미반영)		
제10조	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11조	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12조	실무협의회 회의
제11조	간사	제13조	실무협의회 간사
제12조	운영세칙	제14조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제15조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제13조	예산	제16조	예산
제14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에 대한 지원	제17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에 대한 지원
제15조	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제18조	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제3조	중복감사의 방지	제19조	위원회의 감사
		제20조	위원회 규칙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제정안은 표준 조례안과는 별도로 법에서 규정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격(안 제3조)과 위원회 구성(안 제4조),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안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5)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간에 이견이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시 제정안도 이를 토대로 성안되었음.

- 이는 법령의 규정과 중복되더라도 핵심사항을 제정안에 명시함으로써 입법 체계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표준 조례안에 없는 관계자의 위원회 참석·답변(안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9조), 실무협의회 회의(안 제12조), 사무기구와 소속직원 등(안 제15조), 위원회 규칙(안 제20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음.
- 한편, 표준 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게 3급 지방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하고(안 제8조),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9조).
- 이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예우를 위한 것이나 민간인 위원은 등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와 상충되어 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 (2)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안 제2조·[별표1])

- 안 제2조는 법령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별표1]에서 열거하고 있음.
- [별표1]을 표준 조례안과 비교하면, 일부 사무의 경우 표현과 사업명칭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동일함(붙임자료1 참조).

- 같은 조 제2항은 [별표1]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의 생활안전·교통편의·지역경비 등과 관련해 시급하게 수행해야 될 사무로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간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별표1]의 열거적인 규정으로 완벽하게 규율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치안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하지만, 서울시경찰청과의 합의만으로 자치경찰사무가 확대될 수 있다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있는 법령 취지에 반하며, 자치경찰사무를 규정한 제정안의 [별표1]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입법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어 삭제가 바람직함.
- “경찰법”에서는 경찰의 사무 중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부분을 국가경찰사무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찰사무와의 엄격한 구분과 함께 자치경찰사무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시행령에서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p>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②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민의 생활안전, 교통편의, 지역경비 등과 관련하여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사무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추가할 수 있다.</p>	<p>&lt;삭제&gt;</p>

-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별표1])를 개정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 당초 표준 조례안에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는 강행 규정으로 명시되었지만, 제정안에는 “들을 수 있다.” 는 임의 규정으로 제출되었음.
-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도 사전 절차일 뿐 서울시경찰청의 의견에 서울시가 기속되지 않으므로, 안 제2조 제3항의 문구를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여도 실질적인 차이는 없음.

- 현재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8곳은 강행규정으로 의결·공포하였고, 심사 예정인 8곳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입법예고 또는 발의되었음(붙임자료2 참조).

- 서울시경찰청장의 의견청취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해 자치경찰 사무의 규모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임의규정보다 강행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정안	수정의견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③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u>들</u> 을 수 있다.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③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u>들</u> 어야 한다.

### (3)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제6조)

- 안 제3조는 법 제18조제2항<sup>6)</sup>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6) 법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 법 제24조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 】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특히, 자치경찰위원회를 시장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신설함으로써 단체장으로부터 독립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위원회 의사결정과 사무수행에 있어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법 제19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법에서 규정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요건 미비 또는 결격사유 해당시에 추천권자에게 통보해 재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자(법 제20조 제1항) 】**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 하지만, 자격요건 또는 결격사유와 관련해 재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자격이 적합한 다른 사람의 추천을 요청하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u>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u>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u>다른 사람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u>

- 안 제6조는 법에 따라 시장이 위원장과 임원을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을 선정하면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자치경찰 법령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를 독립성이 강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하고 위원의 구성과 자격, 추천권자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다만,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인권전문가 1명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제19조 제2항·제3항)<sup>7)</sup>, 기관별로 위원 추천권을 보장하고 있어 그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또한, 안 제6조 제2항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상임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법” 제20조 제3항<sup>8)</sup>의 규정대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토록 수정해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7)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정안	수정의견
제6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u>상임위원을 선정한다.</u>	제6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u>상임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u>

#### (4)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제10조)

- 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안의 발의와 상정(안 제7조), 관계자의 위원회 참석과 답변 및 자료제출(안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9조), 위원의 수당(안 제10조)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시장과 위원장은 단독으로, 위원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상정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발의된 안건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관계 공무원 및 경찰관과 그 밖에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는 위원의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가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며,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0조는 위원의 참석·심사수당, 참석비 및 교통비 등 각종 실비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토록 규정함.
- 이상의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들은 위원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안 제8조에서 위원회 참석 대상자 중 “관계 공무원 및 경찰관”으로 규정한 것은 ‘경찰관’의 범위에 혼동을 야기할 수 있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어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수정이 필요함.

제정안	수정의견
제8조(관계자의 위원회 참석·답변 등) 위원장은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관계 공무원 및 경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u> 을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위원회 참석·답변 등) 위원장은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u> 을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의 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저해하고, 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경찰법” 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sup>9)</sup>을 참고해 신규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시장과 경찰청장, 서울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u>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u></p> <p><u>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③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장과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

(5)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안 제11조~제14조)

- 제정안은 시행령에 따라 효율적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과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는 실무협의회의 참여기관을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관계부서,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사무에 아동·청소년 보호업무, 학교폭력 등이 포함되므로 ‘서울시 교육청’도 참여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11조 제1항을 수정해 같은 조 제2항과의 관계기관 중복 규정을 피하고 실무협의회의 운영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p>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찰청, <u>서울특별시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u>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경찰청, <u>서울특별시경찰청 등</u>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p>	<p>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u>제13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u>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경찰청, <u>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u>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p>

- 안 제12조는 실무협의회 회의 협의대상으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된 사항,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협의 결과를 경찰청장 등 소관 기관장에게 통보해 사무 처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는 실무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을 간사로 하고, 안 제14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 전반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12조 제2항에서 실무협의회 협의 결과를 바로 소관 기관에 통보해 사무처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수정이 요구됨.

제정안	수정의견
제12조(실무협의회 회의) ② 실무 협의회 <u>협의결과는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소관 기관장에게 통보하고</u> 각 기관의 소관 사무 처리시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회의) ② 실무 협의회 <u>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소관 기관장에게 통보하고</u> 각 기관의 소관 사무 처리시 반영할 수 있다.

## (6) 사무기구와 예산(안 제15조·안 제16조)

- 안 제15조는 법 제27조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기구를 두고, 조직·정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을 신설하고자 제정안과 함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제출하였음.
-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고, 그 중 시장이 각각 임명하는 위원장은 정무직 1급,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상임위원 1명은 정무직 2급에 해당됨.
-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보좌하는 사무국은 1국·3과·11팀, 56명(정무직 2명, 일반직 38명, 경찰 정원 3명, 파견 경찰 13명)으로 설치·운영될 계획임.
  - 서울시 공무원 31명(행정4급 2명 포함)을 순증하고, 현행 조직담당관의 자치경찰 준비 관련 2개팀(7명)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며, 시행령에 따른 경찰공무원 3명(총경1, 경정1, 경위1)과 경찰청 파견인력 13명 등이 사무국에서 합동근무를 할 예정임.

##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개요

### ❖ 기 구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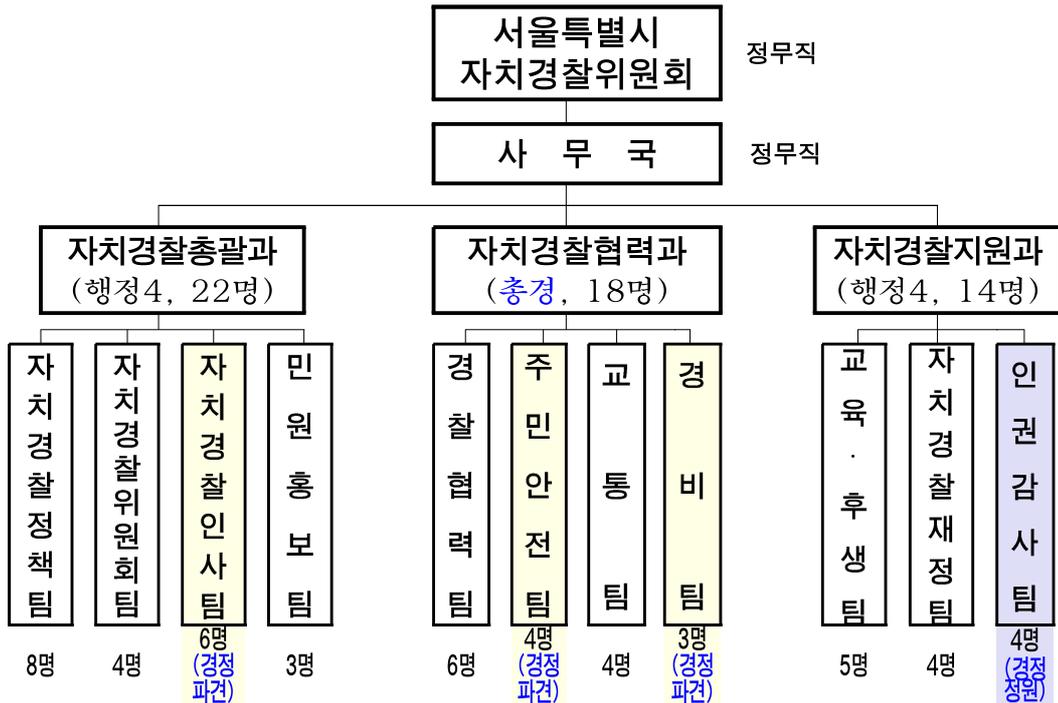
- 성 격 : 서울특별시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 구 성 : 1위원회 1국 3과 11팀 ※ 경찰 4팀 포함
  - ▶ 위원회 : 위원장 1명·상임위원 1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상임위원이 사무국장 겸임)
  - ▶ 사무국 : 1국 3과 11팀
    - 자치경찰총괄과(행정4, 4팀), 자치경찰협력과(총경, 4팀), 자치경찰지원과(행정4, 3팀)

### ❖ 인 력 : 위원회 7명, 사무국 56명 ※ 경찰 16명 포함

- 위원회 : 7명 (정무직 2명 포함)
- 사무국 : 56명 (정무직 2명, 일반직 38명, 경찰 정원 3명, 파견 경찰 13명)
  - ▶(市 40) 정무직 2, 행정4급 2, 행정5급 7, 행정6급 11, 행정7급 15, 전산6급 1, 행정8급 2
    - ※ 배정방법 : 순증 +33명, 이관 7명 (←조직담당관 2개팀)
  - ▶(경찰 3) 총경 1, 경정 1, 경위 1
  - ▶(파견 13) 경정 3, 경감 7, 경위 3

### ❖ 조직도

팀장 : 파견경찰  
 팀장 : 경찰정원



- 한편, 안 제15조제3항은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청 공무원이 함께 사무기구의 소속 직원으로 복무하는 만큼 조직과 정원에 대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하지만, “경찰법”에서는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제27조 제4항)<sup>10)</sup>.
- 따라서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장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정안	수정의견
제15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의견을 <b>들을 수 있다.</b>	제15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b>의견을 들어야 한다.</b>

- 안 제16조는 법 제35조제1항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청취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사무기구) ④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재정법」 11)에 따라 경찰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5월말까지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자치경찰 관련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도록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12)에 따라 8월 31일까지 서울시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 (7)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에 따라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경찰청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실제 자치경찰사무도 함께 수행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등은 배제가 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함.

11)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6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8월 31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재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별로 후생복지 지원 대상자를 살펴 보면, ▶ 사무국 직원으로 한정(광주, 충북, 제주), ▶ 경찰청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한정(인천 등 7개 시도), ▶ 경찰청 공무직까지 포함(부산 등 7개)으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붙임자료2 참조).

**(8) 그 밖의 사항(안 제18조~안 제20조)**

- 안 제18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의회 출석 및 답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19조는 시행령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중복감사를 방지하고자 경찰청장과 협의 후에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20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 하지만, 조례의 하위 법규인 시행규칙과 위원회규칙 간에 법규 성격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 제19조 제2항과 제20조 중 ‘위원회규칙’을 ‘위원회세칙’으로 수정하여야 함.

제정안	수정의견
제19조(위원회의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제19조(위원회의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u>규칙</u> (이하 “위원회 <u>규칙</u>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자치경찰위원회 <u>세칙</u> (이하 “위원회 <u>세칙</u>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회 <u>규칙</u> )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u>규칙</u> 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회 <u>세칙</u> )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u>세칙</u> 으로 정한다.

### (9) 부칙

- 제정안은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시기에 대해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실시일에 맞춰 “2021년 7월 1일” 부터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전국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가 구성되는 만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도입 시기의 혼선 문제는 적극적인 시민 홍보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정안	수정의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u>7월 1일부터 시행한다.</u>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u>한다.</u>

## 마. 종합의견

- 자치경찰제는 “경찰법” 과 「지방분권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7월부터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제정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경찰청과 이견을 보이는 ▶ 합의를 통한 자치경찰사무 추가(안 제2조 제2항) ▶ 서울시경찰청장에 대한 임의적 의견청취(안 제2조 제3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또한, ▶ 자격요건 또는 결격사유와 관련해 동일인 재추천 제한(안 제5조), ▶ 위원회 의결로 시장에게 제청할 상임위원 선정(안 제6조),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통보(신설),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참석 및 답변자 중 경찰관의 명확화(안 제8조), ▶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에 서울시교육청 포함(안 제11조), ▶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실무협의회 협의 결과 통보(안 제12조), ▶ 위원회

규칙의 명칭 변경(안 제20조), ▶ 부칙의 조례 시행시기 등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됨.

- 한편, 당초 논의와 달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일원화 모델이 도입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구분의 실효성, 이원화된 지휘·감독 체계에 따른 혼란, 자치경찰관 인사행정의 불명확성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우려해 경찰법과 시행령에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표준 조례안까지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따라서 자치경찰제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제정안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차후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은 향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통합·연계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시민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요지

### 가. 수정이유

- 서울시경찰청장과의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거나, 위원회 회의와 심의·의결에 대한 통보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함.

###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서울시경찰청장과의 합의로 자치경찰사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의 자치경찰사무를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경찰청장의 의견 청취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함(안 제2조).
- 위원장이 시장에게 상임위원을 제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통보 등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 회의 참석과 답변 대상자를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9조).
-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추가함(안 제12조).
- 실무협의회 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3항제2항).
- 조례의 시행 시점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함(부칙).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32
----------	---------

제안년월일 : 2021년 4월 22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서울시경찰청장과의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거나, 위원회 회의와 심의·의결에 대한 통보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서울시경찰청장과의 합의로 자치경찰사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의 자치경찰사무를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경찰청장의 의견 청취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함(안 제2조).
- 위원장이 시장에게 상임위원을 제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통보 등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 회의 참석과 답변 대상자를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9조).

-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추가함(안 제12조).
- 실무협의회 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3항제2항).
- 조례의 시행 시점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함(부칙).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  
취한다.

③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안 제3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사람에게 자격요  
건”을 “사람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상임위원을 선정한다.” 를 “상임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안의 제안 및 상정)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안 제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를 각각 안 제9조부터 안 제21조까지로 하고,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장과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9조(원안 제8조) 중 “위원장은 안건을” 를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경찰관과” 를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 으로 한다.

안 제10조(원안 제9조)제2항 중 “당사자는” 을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으로 한다.

안 제11조(원안 제10조) 중 “위원의 참석·심사수당, 참석비 및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을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으로 한다.

안 제12조(원안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을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로,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경찰청” 을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으로 한다.

안 제13조(원안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실무협의회 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처리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안 제18조(원안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를 “법 제3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를 “후생복지, 처우 등의” 로, 같은 조 제2항 중 “직원에게도 필요한 경우” 를 “직원에게” 로 한다.

안 제19조(원안 제18조) 중 “출석·답변” 을 “출석하여 답변” 으로 한다.

안 제20조(원안 제1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규칙 (이하 “위원회규칙” 이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세칙(이하 “위원회세칙” 이라 한다)” 로 한다.

안 제21조(원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위원회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세칙으로 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생략)</p> <p>② <u>별표 1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민의 생활안전, 교통편의, 지역경비 등과 관련하여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사무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추가할 수 있다.</u></p> <p>③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절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④ <u>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원안과 같음)</p> <p>&lt;삭 제&gt;</p> <p>②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절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u></p> <p>③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제3조(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시장</u>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u>를 둔다.</p>	<p>제3조(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p>	<p>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p>

제정안	수정안
<p>추천받은 <u>경우</u> 추천권자 또는 추천받은 <u>사람에게 자격요건</u>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람을 추천받은 <u>경우에는</u> 추천권자 또는 추천받은 <u>사람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u>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원안과 같음)</p>
<p>제6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회의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u>상임위원을 선정한다.</u></p> <p>③ (생략)</p>	<p>제6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원안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회의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u>상임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u></p> <p>③ (원안과 같음)</p>
<p>제7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시장과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u>범위 안에서</u>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u>단독으로 발의</u>할 수 있다.</p> <p>② 위원은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u>발의</u>할 수 있다.</p> <p>③ 위원장은 <u>발의된</u>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p>	<p>제7조(의안의 제안 및 상정)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u>범위에서</u>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u>제안</u>할 수 있다.</p> <p>② 위원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u>제안</u>할 수 있다.</p> <p>③ 위원장은 <u>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안된</u>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를 소집·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장과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p>

제정안	수정안
<p>제8조(관계자의 위원회 참석·답변 등) <u>위원장은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경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u>보하여야 한다.</u></p> <p>제9조(관계자의 위원회 참석·답변 등) <u>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p> <p>② <u>당사자는</u>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생략)</p>	<p>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원안과 같음)</p> <p>② <u>해당 안건의 당사자는</u>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원안과 같음)</p>
<p>제10조(위원의 수당) <u>위원의 참석·심사수당, 참석비 및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u></p>	<p>제11조(위원의 수당) <u>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u></p>
<p>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u>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경찰청, <u>서울특별시경찰청</u>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u>제13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u>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경찰청, <u>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u>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p> <p>③ (원안과 같음)</p>
<p>제12조(실무협의회 회의) ① 실무협의회는 다</p>	<p>제13조(실무협의회 회의) ① 실무협의회는</p>

제정안	수정안
<p>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p> <p>1.~ 4. (생략)</p> <p>② 실무협의회 <u>협의결과</u>는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u>소관 기관장</u>에게 통보하고 <u>각 기관의</u> 소관 사무 <u>처리시</u> 반영할 수 있다.</p>	<p>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p> <p>1.~4. (원안과 같음)</p> <p>② 실무협의회 <u>협의결과</u>는 <u>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u>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u>관계기관의 장</u>에게 통보하고 <u>각 관계기관의 장</u>은 소관 사무 <u>처리시 이를</u> 반영할 수 있다.</p>
제13조~제16조 (생략)	제14조~제17조 (원안과 같음)
<p>제17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u>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u>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u>직원에게도 필요한 경우</u>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8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u>법 제3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u>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u>후생복지, 처우 등의</u>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u>직원에게</u>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8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출석·답변</u> 하여야 한다.</p>	<p>제19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출석하여 답변</u>하여야 한다.</p>
<p>제19조(위원회의 감사)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u>으로 정한다.</p>	<p>제20조(위원회의 감사) ① (원안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세칙(이하 “위원회세칙”이라 한다)</u>으로 정한다.</p>
<p>제20조(위원회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위원회 규칙</u>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21조(위원회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위원회 세칙</u>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u>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권자 또는 추천받은 사람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회의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상임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의안의 제안 및 상정)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장과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자의 위원회 참석·답변 등)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회의)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원 간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 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장,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처리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간사)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된다.

제15조(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① 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예산)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법 제3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감사)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세칙(이하 “위원회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회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2조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 전담 경찰관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장소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시행
2) 주민 참여 방범 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와의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 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 요령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3) 안전 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 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li> <li>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li> <li>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li> <li>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li> </ul>
	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실종 사전예방활동</li> <li>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li> <li>③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li> <li>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li> </ul>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보호 인력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li> <li>②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아동안전 보호기관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li> <li>③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li> </ul>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소년 비행 사전방지 활동</li> <li>②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청소년 참여제도 운영</li> </ul>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li> <li>②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li> <li>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li> <li>④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li> </ul>
	바)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폭력 범죄근절 및 예방활동</li> <li>②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li> <li>③ 학교폭력 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li> </ul>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li> <li>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li> </ul>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 홍보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①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 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그 밖의 경범, 주취자 등 지역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주민생활 관련 신고 처리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다)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관련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처리업무 ②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 응급구호대상자 관련 보호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구매·보급·관리 ② 교통단속장비 구매·보급·관리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설치·관리·운영 ②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③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 시설 심의·결정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 구성·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①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선발·관리 등 지원 ②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차 통행허가 처리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① 도로공사 신고접수 및 도로점용허가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접수 관리 및 안전점검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관리
	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신청·관리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 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교통사고 신고처리 ② 교통안전 및 소통 관련 신고처리

사무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그 밖에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 업무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①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③ 그 밖에 도로통제 등으로 교통정체 우려시 관련 기관의 사전대책 협의
	마) 지역 내 교통안전 대책 수립·시행	①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① 도로법, 교통안전법 등 교통관련 법령상 유관기관 협의 ②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①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안전 대책 협의 및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대책 협의 및 행사장 안전관리·안전활동 지원

비고 1: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비고 2 : 위 표의 가목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은 ‘지역 내에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으로 본다.